



## 로케이션 스카우팅 투어 지원 사업 가이드

한국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스카우팅 투어 지원 사업은 해외 및 국제공동제작 영상물의 한국 촬영 유치를 위해 기획개발 혹은 프리-프리덕션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의 키스태프에게 한국 로케이션 스카우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 촬영을 계획 혹은 고려하고 있는 해외 영상물의 감독, 프로듀서, 조감독, 촬영감독, 미술감독 등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국제공동제작 영상물의 경우 외국인 키스태프만 지원 가능하다.

※국제공동제작영상물은 한국과 해외와의 공동제작영상물을 뜻함

### ■ 지원 내용

- 프로젝트당 최대 2인에게 최대 6일간 한국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왕복 항공권 (대한민국 국적기 이코노미 클래스 가격 기준)
  - 숙박비 : 최대 6박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1박 최대 20만원)
  - 국내 로케이션 코디네이터 1인 지원(최대 6일)
  - 차량 렌탈 혹은 교통비 지원
- 지역영상위원회의 스카우팅 투어 지원을 받을 시, 동일한 내역은 지원하지 않는다. 동일한 내역이 아닌 경우 한국영상위원회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 자격 요건

- 한국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및 국제공동제작 영상물
  - 장편영화, 다큐멘터리, TV물(TV 영화, 미니시리즈, 시리즈, 시트콤)
  - 온라인 스트리밍용 영화, 시리즈(OTT)
  - 해당 영상물은 러닝타임 60분 이상이어야 하며 시리즈물은 에피소드를 합산해 60분 이상이면 된다.
- 프로젝트의 감독, 작가, 조감독, 프로듀서, 촬영감독, 미술감독, 로케이션 매니의 방문에만 해당하며 외국 국적자여야 한다.
- 뉴스 프로그램, 지역 TV 프로그램, 포르노, 단편 혹은 실험영화, 인포테인먼트, 예능 등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 신청 및 심사

- 신청인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에 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영상위원회 담당자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신청인은 한국 로케이션 스카우팅 최소 6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영상위원회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서류 접수 후 2주 이내에 예상 지원 내용을 포함, 지원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지정 양식 제출)
  - 시놉시스 혹은 트리트먼트(한국 내 촬영분 표시 필수)  
다큐의 경우 제작기획서로 대체
  - 투어 참가자 필모그래피
  - 국내 및 해외공동제작사 사업자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기타 보증서 : 감독 계약서, 주연 배우 계약서, 제작비의 50% 이상을 투자받았음을 증명하는 투자계약서, 배급계약서 혹은 선판매계약서 제출  
1)신청작이 기획개발 단계일 경우, 위 보증서 중 두 개 이상 제출  
2)다큐멘터리의 경우, 투자계약서 대신 국내외 타기관의 지원확정서 인정  
3)해외와의 공동제작작품일 경우, 투자계약서 대신 해외제작사와의 공동제작계약서 혹은 공동제작의향서 인정
- 그 외 심사에 도움이 되는 서류(주요 스태프 필모그래피, 상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언급된 프로젝트 관련 기사 등)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지원을 확정된 뒤에 신청 시 제출했던 내용(방문자, 방문일정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사전에 한국영상위원회로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 ■ 지급

- 신청인은 아래의 두 가지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한국영상위원회에서 직접 항공권 및 숙소 예약 진행
  - 신청자 자비로 항공권 및 숙소 예약 진행 뒤, 증빙 서류(영수증, 인보이스, 티켓 등) 제출 시 한국영상위원회에서 사용 비용 지급
- 국내 로케이션 코디네이터 용역 비용은 한국영상위원회에서 직접 지급

## ■ 기타

- 신청인은 한국영상위원회가 지정하는 형태로 “한국영상위원회” 로고를 “지원”이라는 제하의 크레딧에 삽입해야 한다.
- 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작품은 고화질(2K 이상)의 완성된 제작물의 영상, 인쇄용 수준의 디지털 스틸 사진, 영화의 프로모션을 위해 제작된 포스터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영상위원회는 이를 연구 및 본 사업 홍보 등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본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작품의 진척 상황(촬영 개시, 촬영 완료, 배급 현황, 영화제 출품·수상 내역 등)을 지원을 받은 해로부터 2년 까지 한국영상위원회에 보고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신청인은 한국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이를 제출해야 한다.